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ONTENTS

I 총괄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2. 용어 정의
3. 적용 예외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학교의 책무
6. 학부모의 책무
7. 시정 및 변경 명령과 이의신청

II 학 교 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평가

III 방과후 학 교

1.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

IV 입학전형

1.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법규 및 해설
2. 대학 입학전형 관련 법규 및 해설





총괄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2. 용어 정의
3. 적용 예외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학교의 책무
6. 학부모의 책무
7. 시정 및 변경 명령과 이의신청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2. 용어 정의

선행교육 |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

선행학습 |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 교육관련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비교

구분	선행교육	선행학습
주체	교육관련기관	학습자
정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선행교육의 의미



Q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1~2, 3~4, 5~6 학년군, 중·고등학교는 1~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임.
-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초등학교는 학년군을,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것임.
-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것임.

3. 적용 예외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 교육원)의 영재교육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 **적용 배제 교과** :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 2019년 3월 26일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적용 예외에 포함됨.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 2) 선행교육 부작용 예방과 시정을 위한 노력
- 3)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은 학교가 국가에서 정한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의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조사 대상 자료 : 교과진도계획표, 교육과정편성표, 지필·수행평가 자료, 각종 교내 대회 자료, 입학전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

| 교육부의 역할 |

-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여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초·중등교육법」 제23조)
- 공정한 학생 평가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을 작성하여 제공(「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이 선행교육 위반 및 선행학습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조정**

| 시·도 교육청의 역할 |

-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가 반영된 시·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고시하여 학교가 법 위반 없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안내 및 지도
- 시·도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작성·안내하여 학교에서 공정한 학업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관리
- 학교가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해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학교가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점검단 또는 컨설팅 지원단 등을 조직·운영

(2) 선행교육 부작용 예방과 시정을 위한 노력

- 선행교육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 수행 및 개선 대책 마련 등
선행교육 관행의 근절을 위해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운영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역할

-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분석 시행
- 선행교육 부작용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연구 수행
- 선행교육 부작용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의 교육 및 상담

(3)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국가 및 시·도 수준에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감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민원처리 흐름도(예시)

구분	처리기관	업무처리
① 출제 문제 등에 대한 이의 제기(민원발생)	학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 →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 (☞ ②)
②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교육(지원)청	· 필요 시 장학지도·조사 및 감사 후 해당 학교에 처리 방안 통보 →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③)
③ 교육감 소속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교육(지원)청	·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교육(지원)청의 검토서 등을 내부 검토 후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결정(필요 시 장학지도·조사 및 감사 등 실시)
④ 교육감 소속 시·도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개최 및 후속조치	교육청	·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개최 →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시정, 변경 명령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 학교장 징계의결 요구 -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행·재정적 제재

5. 학교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의 책무



- 1)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 연간 교과지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정상적 수업활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함.
- 2)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학교 내 기구들을 활용하여 감독
- 3)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계획 등을 학교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
- 4)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한 수업 금지



6. 학부모의 책무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공개의 날,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7. 시정 및 변경 명령과 **이의신청**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 내지 제16조)

시정·변경 명령

-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변경 명령 이행

명령 불이행 시

- 기관장 징계 요구
 -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 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 학교운영경비 10% 내 삭감
 - 총 입학정원의 10% 내 모집 정지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처분 통지 14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 공지
 - 이의신청 접수 30일 이내

II

학교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평가



1.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구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 하나요?

X

A

-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님.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동일 교과목을 2개 학기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학기의 학습 내용을 이번 학기에 미리 지도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 선행교육에 해당함.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다음 학기 학습 할 내용을 미리 지도하는 것은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므로, 변경된 진도 계획을 정보 공시에 반영해야 함.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분담하여 지도하는 것도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X

A

-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교사 간에 가르칠 단원을 배분할 때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할 순서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의 위계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함.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X

A

- 과제를 부여하지 말아야 함. 입학예정 학생에게 입학 전 상급 학교(입학예정 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됨.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X

A

- 그렇지 않음. 수준별 수업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 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함.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A

-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초6~중1, 중3~고1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됨.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에서 선행교육이 허용되나요?

X

A

- 교사가 동아리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등)에 비하여 한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지도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됨.
- 단, 해당 학기에 편성 운영되는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범위에서의 심화 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에 따른 선행 요소를 포함한 설명은 가능함.

고등학교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한 학기 내에서 위계가 있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나요?



A

• 개설할 수 있음. 그러나 위계에 어긋나지 않게 진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고등학교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고등학교] AP, UP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X

A

- AP, UP는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고등학생이 미리 이수하여 대학 진학 후 과목 학점을 미리 취득하는 제도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에 해당되지 않음.

고등학교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고등학교]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 선행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학생은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졸업 이전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을 공동교육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음.
- 이때,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본인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수강하도록 안내해야 함.

2. 평가

평가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구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 가	재 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입학예정 학생	
		<p>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p> <p>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p>



선행 출제의 해당 범위

Q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X

A

-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의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일부의 소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음.
- 또한 동일 교과목을 두 학기 이상 편성했을 때 첫 번째 학기 기말고사 이후의 내용을 두 번째 학기의 중간고사에 출제할 수 있음.
- 다만, 진도표와 평가 계획에 이와 같은 문항 출제 계획을 명시해야 함.



선행 출제의 해당 범위

Q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서 다음 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 다음 학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임. 이때,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보 공시의 수정 없이 학교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는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지도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임. 그러나 한 학기 안에서 지도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지도하는 경우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 아님.

선행 출제의 해당 범위



Q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X

A

- 예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다음 학기에 수학 교과에서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함.
- 이와 같이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반드시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선행 출제의 해당 범위



Q

[중학교] 자유학기(년)제를 운영하며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함.
-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임.

선행 출제의 해당 범위



Q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임. 예를 들어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 진도 계획에 맞추어 출제해야 함.



방과후학교

1.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



1.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1.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03. 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1.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

다음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관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음.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4항)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학교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을 허용함.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의2)

1.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

방과후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에 심화·보충 내용을 구성할 수 있나요?

A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 수업을 대신하여 교과서 진도를 나가거나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금함.

IV

입학전형

1.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법규 및 해설
2. 대학 입학전형 관련 법규 및 해설



1.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2월 말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 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1. 중·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법규 및 해설

제9조

-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범위]

① 범위와 수준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예) 고등학교 입학전형 ->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

② 대상 학교

국제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영어교과반영; 과학고등학교-수학·과학교과 반영), 자율형 사립고, 일부 자율학교

제9조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가능 활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 상황(활동 내용, 활동 결과 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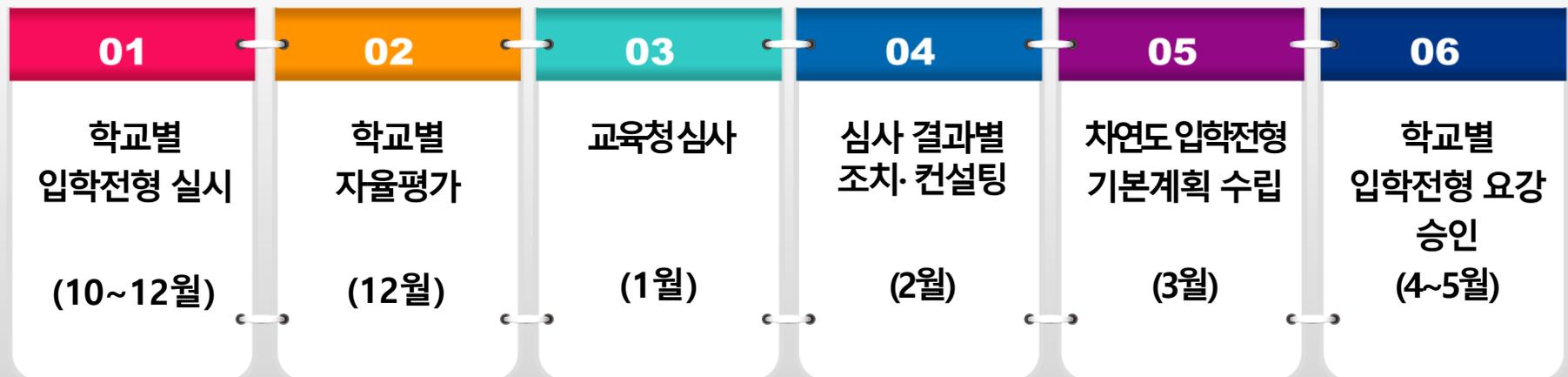
외부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주관한 행사, 청소년단체활동(2~3학년),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

제9조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2월 말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 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예시 (필요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Q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학교생활기록부를 입학전형 자료로 제출 시 해당 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함.

2. 대학 입학전형 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 대학 입학전형 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② 대학 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대학 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대학 입학전형 관련 법규 및 해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기관
 -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적용 배제 교과
 -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2. 대학 입학전형 관련 법규 및 해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 ③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대학 등의 장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자체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
 -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실시

- ④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학 등의 장은 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 기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계획도 변경하여 반영 가능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Q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나요?

A

-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어야 함.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의2)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범위



Q

면접·구술고사의 경우,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

-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확인 면접 등의 경우에는 논술, 면접·구술고사와 달리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과 지식을 직접 묻는 면접은 아니더라도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항을** 예시문으로 활용하거나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측정하는 면접은 논술 등과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감사합니다

